
정책참고자료

2019-1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만든다** _____ 4
-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6개 선정 -

2 국민권익위원회

-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_____ 8
- 4일 화천군, 5일 원주시 민원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

3 중소벤처기업부

- 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_____ 11

4 교육부

-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_____ 16
- 학생 탈의시설 확충 및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시티의 미래 모습, 국민과 함께 그려나갑니다.** _____ 20
-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앞두고 메이커톤 등 다양한 공모전 개최
다양한 사전행사 통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 및 친숙도 확산 기대 -

6 문화체육관광부

-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_____ 2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0일부터 지정
가능, 관광산업의 범위가 커져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로컬푸드 우수사례 확산 지원!** _____ 30
-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8 환경부

- 대기배출시설 및 날림먼지 발생원의 촘촘한 관리** _____ 34

9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제도 운영, ————— 40
- 민간 기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

10 여성가족부

남성육아휴직자, 경험 청취 통해 가족친화문화 확산

-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 가족친화인증기업 관계자 및 ————— 52
- 육아휴직경험 아빠들과 간담회 -

11 국토교통부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55

-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12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예비 선원들 준법조업 배운다

- 조업감시센터, 오션폴리텍 어선 승선 교육생 대상 불법어업 예방교육 실시 - ————— 60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만든다

-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6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획일적 접근이 어려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임신·출산·양육 등 저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합천군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손·오·공”

* (손·오·공) ‘손’에 손 맞잡고, ‘오’순도순, ‘공’들여 함께 키우는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육아 커뮤니티 거점인

대전형 돌봄 지원센터 설치(시청 인근, 연면적 400㎡, 리모델링)

- 돌봄 공동체 활동가(맘코치) 양성, 육아 멘토링을 위한 배달강좌 실시,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물품공유소 운영 등

▶ 경기 시흥시,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 “다 가치 키움”

* (다 가치 키움) ‘다’ All, ‘가치’ Together & Value, ‘키움’ Growth

- 건강관리 중심의 보건소 패러다임을 전환, 보건지소에 임신-출산-돌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 조성(정왕보건지소, 연면적 528㎡, 리모델링)
- 임신 전·중·후의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육아 코디네이터 양성 등

▶ 전북 김제시,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 여성·아동, 청소년, 가족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형 공간 조성(지평선어울림센터, 연면적 1,990㎡, 리모델링)
- △공동육아방, 놀이체험실, 맘스카페 등 돌봄 공간, △진로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취미활동방 등 청소년 공간, △양성평등교실, 소통을 위한 가족 공간 조성, △각 공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전남 영광군,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조성하여 보육과 창업을 연계하는 통합 거점 구축(영광시장 인근, 연면적 1,200㎡, 신축)
-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 창업단지 입점 우대, 24시간 돌봄터, 어린이 놀이공간, 육아용품 나눔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설치

▶ 경북 문경시,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

* (도담)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고 자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 놀이·체험·돌봄·교육 통합 문화커뮤니티 공간인 놀이지원센터 건립(영신숲 공원 인근, 부지면적 4,592㎡, 신축)
- 그림책카페, 놀이교육장(부모교육), 맘커뮤니티룸, 물놀이 시설(스케이트장), 스몰웨딩공원, 씨앗놀이터(텃밭체험) 조성 등

▶ 경남 합천군,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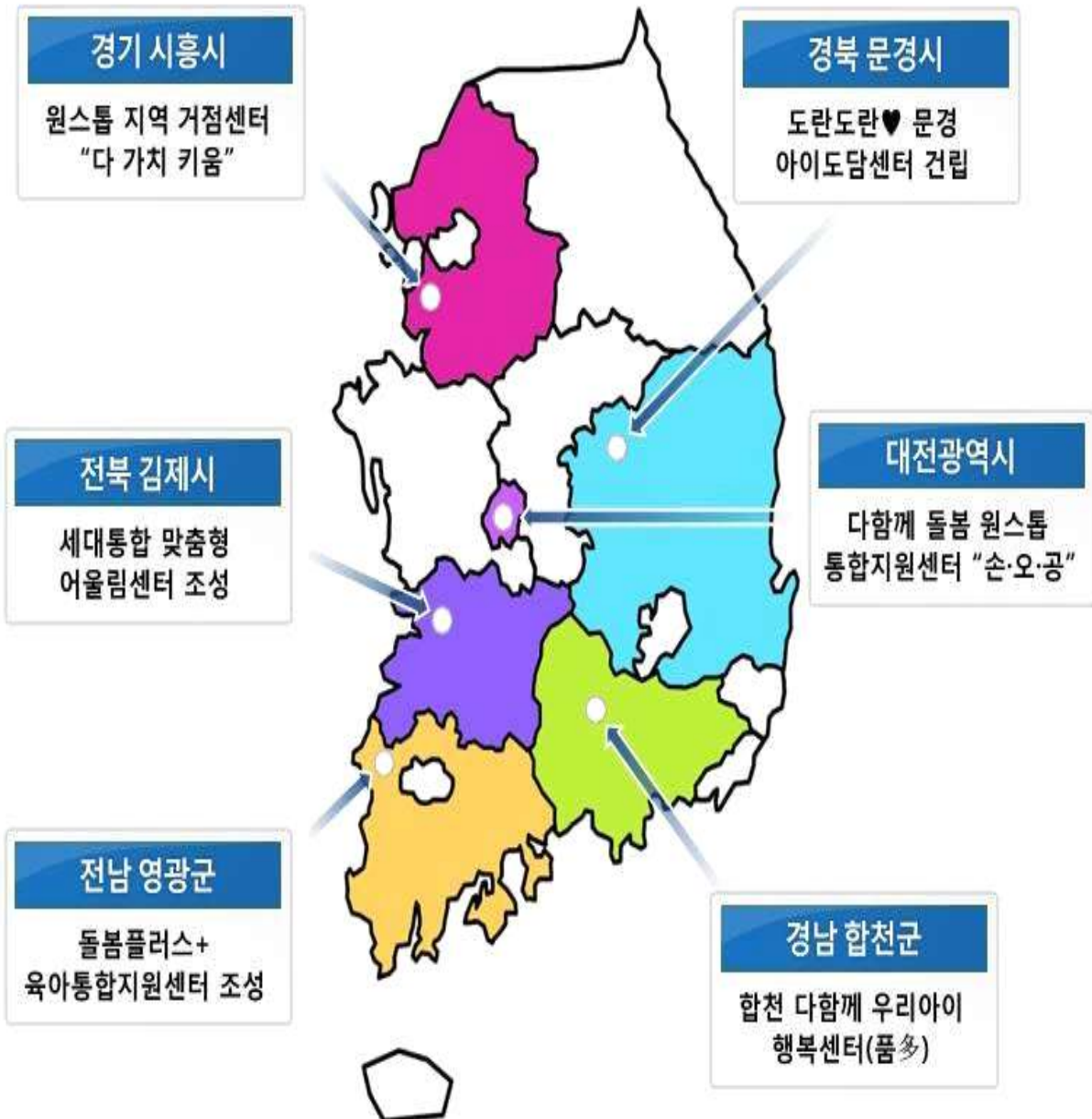
* (품多) 「산모는 아이를, 아이는 꿈을, 주민은 행복을 품은 곳」

- 관공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등 밀집지역에 출산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거점센터 조성(군청 인근, 연면적 660㎡, 신축)
- 보건소 모자건강증진센터 이전·설치(임신-출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농번기 긴급돌봄 등 초등돌봄시설 확충, 돌봄공동체 육성 등

□ 향후,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6개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 해소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2019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선정결과



강원 홍천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도로침범 통행위험 해소된다

- 16일 현장조정회의에서 별도 주차공간 마련키로 관계기관 합의 -

-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우체국 택배차량이 물품을 싣고 내리면서 도로를 침범해 주민과 통행차량이 위험에 노출돼 왔던 문제가 주차공간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웅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교통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반곡우체국 앞 도로에 면한 공간이 좁아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시 도로 침범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2년 12월 왕복 2차로였던 반곡우체국 앞 국지도 70호선의 확장 공사가 착공됐지만 도로부지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도로는 반곡우체국 쪽으로 바짝 붙게 됐다. 그래서 택배차량의 작업공간이 더욱 줄어 도로를 확장했음에도 오히려 통행 위험이 더 커졌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반곡우체국 부지가 협소해 국지도 70호선의 침범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반곡우체국의 부지 확장이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홍천군 서면 이장협의회장 외 주민 617명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반곡우체국의 이전이나 주차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재의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강원지방우정청, 홍천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현장조정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홍천군 등 관계기관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대책마련을 협의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매각협의 등 대안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조정안에 따르면 홍천군은 인근 국공유지 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반곡우체국 부지와 인접한 곳에 지역주민과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이용 및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우체국 앞 보호 난간 조성 및 차선 도색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주차공간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반곡우체국 부지에 있는 담장 철거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웅 상임위원은 “그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대형 택배차량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반곡우체국 택배차량의 작업 모습>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 기존 운영 중인 29개 신고센터에 40개 사업자단체 추가 -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기에 있는 여성 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리-여성경제인 간담회(4.10), 중기부장관-여성기업인 간담회(5.24) 등

- 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 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22년까지 1,000억원).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 (예비) 오픈바우처 → (초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비스바우처 → (도약기) 도약패키지

- ②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5,000억원), R&D 지원사업(100억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③ 여성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 8% ↑),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늘린다.(특별방송 월 1→2~3회 확대 등)
-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 명시(의무화) 및 여성 평가위원 확대('18년 중기부→'19년 전부처·공공기관), 차별관행 시정대상기관 확대 및 시정절차 강화 등

박영선 장관은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약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99.2.5일 제정) 제5조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00~, 20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2. 주요 내용

< 주요 핵심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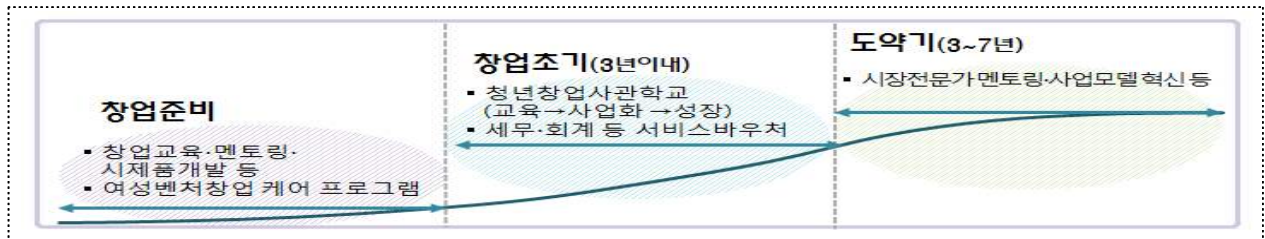
- 단계별 여성 전용(우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오픈바우처→청년창업사관학교·서비스바우처→도약 패키지(20억원, 신설))
-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억원 추가 조성(확대, '22년까지 총 1,000억원)
-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BI) 개편(공유공간, 여성친화시설 구축 등)(신설)
- 취약계층 여성(여성가장) 창업자금 50억원 확대(총 75억원, 전년대비 200% ↑)
- 여성전용 R&D 100억원 운영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우대)(신설)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9.2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0.7조원, 8% ↑)
-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5,000억원, 보증료·보증비율 등 우대)
- 여성기업 전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여성경제인단체 등)(신설)
-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협동조합 포함(신설)
-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강화(실태조사, 전부처 확대적용 등)(확대)

□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

-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오픈바우처(예비), 청년창업사관학교(초기), 도약패키지(도약기, 신설, 최대 3억원) 등

< 단계별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



- (벤처펀드 운영) 총 300억원 규모(모태펀드 180억원 출자)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여성기업 발굴·투자(확대)

* 5년간 총 1,000억원 조성 예정('18년 100억원, '19년 300억원, '20~'22년 600억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 낙후시설 보수, 공유공간·여성친화시설 구축 등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개편(신설)
- (취약계층 창업 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확대(25→75억원)하고, 멘토링·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술·생산성 혁신, 금융, 인력 등 지속성장 지원

- (기술·생산성 혁신) 여성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전용 R&D(100억원) 운영 및 스마트공장 구축(우대) 지원(신설)

* 창업성장·제품서비스·상용화·지역특화산업육성 등 기술개발사업은 가점 부여

- (금융)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5천억원 규모) 운영 및 창업·지방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 (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활성화, 경단여성·R&D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우수인력 공급
- (상담 등) 여성경제인 DESK(9개)를 통해 경영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상담 실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결

□ 공공구매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외 판로 촉진

-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9.2조원(0.7조원↑)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 (TV 홈쇼핑) TV홈쇼핑 입점 지원, 공영홈쇼핑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 개최(월 1→2~3회 확대) 등 판로 개척 지원
-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컨설팅, 해외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 등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활성화, 차별관행 근절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여성경제인단체(여경협 등)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등 지원(신설)
- (협동조합 여성기업 인정)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포함하고(신설), 협업·공동사업 지원
-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차별관행 실태조사, 차별금지 명시 등 전부처 확대, 차별관행 시정 강화* 등을 통해 차별요소 철폐(확대)

* 시정 대상기관 확대(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추가) 및 절차 개선(이행계획·결과통지 등 추가)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 학생 탈의시설 확충 및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6일(화),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인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유은혜 장관은 학교 탈의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시간을 가졌으며,
 - 이후 마련된 간담회 시간을 통해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경인고등학교는 학생 인권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9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이다.
 - 반면에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는 아직 탈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탈의시설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 최근 여학생의 체력저하 및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는 대안 논의가 이번 방문에서 이루어졌다.
- ※ 전국 중·고등학교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 현황 : 전체 65.2%(3,710교)
 ※ 현장 방문교인 경인고등학교도 탈의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탈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개선 계획 마련 중

[전국 중·고교 학교 탈의시설 100% 설치 지원]

-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학생 인권 보장과 학생 편의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는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탈의시설 확충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탈의시설 활용도, 불편사항, 개선점 등을 찾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 본격적으로 '20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 신설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기반으로 탈의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21년 상반기 내 전국 중·고등학교에 탈의시설을 완비하고자 한다.
- 또한, 학교 내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탈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 향후 교육부는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고교 탈의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국 중·고교 탈의시설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학교 탈의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시간도 진행되었다.
-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여학생 신체활동을 장려해 왔다.

* 여학생 선호 뉴스포츠 종목 개발·보급,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팀 지원('18년 1,700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학생 체력 및 신체활동이 다소 축소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 여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 : ('16) 7.1% → ('17) 7.8% → ('18) 8.7%

□ 여학생 선호 종목의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여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보다 확대*하며,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여학생 체육활동 우수사례들을 발굴·보급·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14) 1,000팀 → ('15) 1,200팀 → ('16) 1,500팀 → ('17, '18) 1,700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고교 탈의실 확충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 “시·도교육청과 함께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 : 교, '19.4월 기준)

시도	중		고		설치 비율
	전체	설치	전체	설치	
서울	384	255	320	158	59%
부산	173	148	142	108	81%
대구	125	103	93	55	72%
인천	134	88	125	78	64%
광주	90	72	67	52	79%
대전	38	24	62	33	57%
울산	62	50	57	41	76%
세종	24	20	18	16	86%
경기	628	337	475	245	53%
강원	162	133	116	89	80%
충북	126	88	83	44	63%
충남	189	130	116	81	69%
전북	210	137	132	74	62%
전남	255	142	130	76	57%
경북	367	193	256	136	53%
경남	265	262	190	188	99%
제주	46	37	30	17	71%
전체	3278	2219	2412	1491	65.2%

※ 중·고 전체학교수 5,690개교 중 3,710개교 설치(65.2%), 1,980개교 미설치(34.8%)

스마트시티의 미래 모습, 국민과 함께 그려나갑니다.

-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앞두고 메이커톤 등 다양한 공모전 개최
다양한 사전행사 통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 및 친숙도 확산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CE 2019)」의 사전행사로 메이커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국민참여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WSCCE 2019)

- ▶ 시기 : 2019.9.4.(수)~9.6(금)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 ▶ 주최 : 국토부 · 과기정통부 / 주관 : LH · K-Water · 킨텍스

- 9월 4일부터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민 참여행사 외에도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전시회, 컨퍼런스, 비즈니스·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 먼저, WSCCE의 핵심 이벤트 중 하나로 기획된 ‘메이커톤’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주제로 정해진 시간 동안 새롭고 창의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메이킹 마라톤이다.

* 메이커톤: ‘만들다(Make)’ +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대 5명까지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8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8월 17일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최소 10개 팀이 본선(WSCCE 행사기간, 9.4~6)에

진출한다.

- 최고의 창작물을 만들어낸 대상 팀에게는 국토부 장관상과 함께 400만 원의 상금이, 우수상 세 팀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킨텍스 사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 내일의 꿈나무들에게 미래도시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게 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오는 8월 2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다. ‘내가 바라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저학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 정보통신기술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개최된다.

- 8월 12일까지 온라인 서류 제출, 9월 6일 본선을 거쳐 선정된 대상 팀에게는 국토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선정 팀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과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 행사일정과 공모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누리집(www.worldsmartcityexpo.com)이나 엑스포 사무국(031-738-335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추진 배경

- 국내 스마트시티 홍보,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해 2017년 출범한 아태지역 대표 국제행사로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 각국 정부·도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 스마트 시티 산업체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B2B 행사 활성화

□ 행사 개요

- (행사명)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World Smart City Expo 2019 (WSCE 2019)
- (일시/장소) '19.9.4(수) ~ 9.6(금) (3일간) / 킨텍스 제1전시장
- (주최/주관) 국토부, 과기정통부 / LH, K-water, 킨텍스
- (후원) 4차위,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신남방특위, 중기부 등 관련 부처

□ 세부 프로그램(안)

- 스마트시티 주제의 전시관, 컨퍼런스,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비즈니스 행사, 대국민참여행사 등 진행 예정

공식행사	컨퍼런스	전시회
개막식 (VIP 오찬) 네트워킹 만찬, Awards, 통합 시상 및 폐회식	글로벌 조인트, 정책방향, 기술 및 솔루션, 공유경제 및 지속 가능성	스마트시티 전시관 , 스마트시티 체험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 & 네트워킹	국민참여행사	기타행사
IR 투자설명회, G2B 매칭, B2B 매칭	메이커톤, 토크살롱,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경진대회, 스마트시티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G2G 협력프로그램, 스마트시티 투어 등

Smart City, Connecting Tomorrow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19. 9. 4(수) ~ 9. 6(금)
킨텍스 제1전시장

WSCE

**WORLD
SMART CITY
EXPO 2019**
KINTEX, KOREA

www.worldsmartcityexpo.com

주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KINTEX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0일부터 지정 가능,
관광산업의 범위가 커져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7월 10일(수)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였으며(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광특수분류에 해당 필요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 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 >

- ①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②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 ③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트카업체 등 폭넓은 사업체 포함, 관광기금 융자 지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9년 3분기 융자 신청이 7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19년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 가능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6조 원 규모('17년 기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케도업, 한옥체험업 및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

분 야	정 의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여행사 이외에 여행자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관광관련숙박업	여행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업(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호텔, 관광인증모텔, 민박업 등)
관광관련운송업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
관광관련쇼핑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업
관광레저용품소매업	관광 및 레저활동에 필요한 의류, 용품, 장비 등을 소매하는 업
관광관련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업
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순수 및 응용과학물, 문화재, 미술품 등의 진열 또는 역사적인 유적지·전적지·사적지·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여 운영하는 업
공연시설운영업	관광객을 위하여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
식물원·동물원 운영업	살아있는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자연공원운영업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를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기타 관광관련 시설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학습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주장·골프장·스키장·낙시장·수상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장비의 임대 및 강습 등을 수행하는 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운영업	레크리에이션용 레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 전망탑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건설업	관광 관련 건물 및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의 건설업, 관광 택지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업 및 용지를 제외한 레저시설물을 건설하는 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업무, 여행자 대상 수표의 현금화 및 발행, 외국환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장비임대업	관광 및 레저활동, 운송 등에 필요한 장비·자동차 등을 임대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정보서비스업	관광객 및 관광사업체에 일정한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거나, 관광관련 정보 등을 수록한 서적이거나 서적형태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업
관광관련 통역서비스업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온천탕업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연구개발업	관광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업
관광교육서비스업	관광 및 레저스포츠에 특화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업

농식품부, 로컬푸드 우수사례 확산 지원!

-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내 복지·건강·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적극 지원하여 확산시킬 예정이다.
- '로컬푸드'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소비되는 농식품을 의미한다.
 -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구축되면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얼굴있는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고,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내 중소농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게 된다.
-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우수사례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6주 동안 우수활동사례, 신규사업, 민간활동 지원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131건의 사례를 모집하였으며,

< 모집 분야 >

- ◆ 우수활동사례: 기존에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나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한 사례
- ◆ 신규사업: 기존에 추진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규 사업사례
- ◆ 민간활동지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조직·단체간 협업활동 지원

○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활동사례 분야 4건, 신규사업 분야 4건, 민간활동 분야 10건 등 총 18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하였다.

○ 선정된 사례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3천만원 수준의 사업비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향후 다른지역에도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각종 홍보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지난 7월 17일에는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18건 중에서도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최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장관상을 시상하였다.

○ 유형별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우수활동사례 분야에서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정되었는데, 마을 거점에 마을주민 중심으로 공유냉장고를 보급함으로써 로컬푸드 확산 및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공심채농업회사법인”이 입상하였는데, 결혼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정착한 여성들의 아열대채소 재배 지원으로 제주지역의 특징적인 아열대 채소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확산, 결혼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된다.

○ 민간활동지원 분야는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인드라마생활협동조합” 경우 골목장터를 주제로 서울 양천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 “옥천살림조합”의 경우 공유부역을 통한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완주문화재단”은 농업으로 대표되는 로컬푸드에 예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로컬푸드 인식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 농식품부는 지난 6월에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2)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2022년까지 현재 49%인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를 까지 70%로 끌어올리고, 로컬푸드 유통비중을 15%까지 확산함으로써 지역 소농들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돋우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강화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접수된 입상작 이외에 모든 사례들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추진배경

-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단위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업 모델 전국 확산 유도
-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하여 지역 사회 내 푸드플랜 추진역량 강화

□ 주요내용

- (모집분야) 사업모델 발굴, 푸드플랜 역량강화 등 총 3개 분야

구분	사업모델 발굴		푸드플랜 역량강화
	우수 활동사례	신규 사업모델	민간활동지원
공모 주제	현재 운영 중인 먹거리* 관련 활동사례	먹거리* 관련 계획수립 또는 준비단계 사례	푸드플랜(로컬푸드) 확산 위한 민간활동**
지원 내용	컨설팅, 운영, 홍보 지원 (최대 35백만원/보조 100%)		사업경비, 홍보 지원 (최대3천만원/보조100%)
선정 규모	분야별 각 4개소		10개소
대 상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푸드플랜 실행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먹거리 사례 범위

- 생산·유통·소비 : CSA, 농산물 크라우드 펀딩, 로컬푸드 신규 유통채널 등
- 복지·건강 :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제공,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
- 환경 : 음식 폐기물 활용 신규사업, 푸드마일리지 저감 방법 등
- 기타 ‘푸드플랜’에 포함되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업

예) 소비자협동조합생산자 꾸러미, 사회적기업 조식 제공 아파트, 사회적경제조직 협력 로컬푸드 도시락 개발 등

** 푸드플랜 확산 활동 : 자체 거버넌스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기 포럼·토론회 개최 등

대기배출시설 및 날림먼지 발생원의 촘촘한 관리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19. 7. 16.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 또한,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 (지역별)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도 28개

□ 다음으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 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하여 운행차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 차량은 사람과 가까이에서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 높아 이 지역 주민들의 대기 개선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참고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 대기배출시설 관련 : 환경부장관에 권한 부여

관련 법령	구분	조 항	내 용
시행령	사 업 장 관 리	제11조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
		제12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 등
		제18조	측정기기 운영 관련 조치명령 및 기간연장
		제20조	개선명령 및 기간 연장(1년 이내) 신청사항 검토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개선계획서 접수 및 필요 시 제출기간 연장
		제21조제4항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개선계획서 접수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사항 확인
	부 과 금 관 련	제29조	기본부과금 산정 자료 제출 요구
		제30조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
		제31조	확정배출량 관련자료 제출 요구
		제33조	배출부과금 부과 시 부과금액, 납부기간 등 통지
		제34조	배출부과금 조정 및 부과·환급사항 서면 통지
		제35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결과 통지
		제36조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합납부 신청서 접수 등
	권 한 의 위 임	제63조	사업장 관리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위임
시행규칙	사 업 장 관 리	제26조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제27조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 및 신고사항 수리
		제28조	방지시설 설치 면제 서류 접수
		제31조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 설계·시공 서류 접수
		제32조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서류 접수 등
		제34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 등
		제38조	개선계획서 접수 및 개선여부 확인
		제39조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개선계획서 등 접수
		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변경 필요사항 통보
		제44조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및 기간 인정
	부 과 금 관 련	제45조	기본부과금 산정 자료 접수
		제47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관련 서류접수 및 면제사 항 통보
	기타사항	제5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에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포함
		제131조	사업장 출입·검사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권자 에 지방환경관서장 추가

< 날림먼지 관리강화 관련 개정내용 >

- ☐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영 제44조 제5호 개정 및 규칙 별표13 제5호 가목·라목 개정, 마목 신설)

○ 재도장, 대수선, 농지정리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

구분	신고대상
재도장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

*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5년마다 외부 도장공사 시행(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증축·재축이 아닌, 건축물의 기둥, 보,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공사

*** 농지조성공사: 간척매립지 및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공사
농지정리공사: 영농에 편리하도록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는 공사

- ☐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신설)

○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구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 건축물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작업 가능

□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 의무 도입**(규칙 별표 14 제11호 바목 신설)

○ **건설공사장**(수도권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서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하도록 의무 부여**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방진망 개구율 기준 명확화**(규칙 별표14 제1호 나목 개정)

○ 방진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야적, 야외 연마 등 공정에서도 야외도장 공정과 같이 방진망 개구율(40%)을 정량적으로 규정

□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규칙 제58조제2항제3호 개정, 제3의2호 신설)

○ 날림먼지 발생 사업 규모가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 다만,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경우 매우 큰 규모이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하도록 규정 마련

* (특별관리공사장) 건설업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 (특별관리사업장)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제도 운영,
민간 기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2019.2.22.)와 소책자(2019.5.14.)를 배포·게재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 경총과 연계한 현장설명회 실시(2019.7.10.) 등
-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 (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도 연계 · 운영할 계획이다.

□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의 모호함,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 제기됐습니다.
 - 이에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질의 등을 모아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이나,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
- (관계의 우위)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피해자 간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고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일 경우에 해당
-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지만,
- 사용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 설령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인정될 수 있음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정도, 일회성·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①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 ☐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음
-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던 ㄱ 은행의 한 지점장
- 일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ㄴ 광고회사의 부장
- 업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유관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직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ㄷ 회사의 팀장

②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 ☐ 사적용무 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이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낱자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과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김과장은 김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애인 생겼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나” 등 김대리의 연애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함. 그 외에 성적 언동으로 볼 질문이나 얘기는 없었고, 이후 김대리의 연애에 대해 김과장이 달리 언급한 바도 없음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 ☐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음
-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것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 영어교육은 업무 분장에도 없으며, 임원 및 다른 인사부서의 협의도 없이 상사의 지시만으로 회사 회의실에서 몰래 업무시간 중 진행함. 그 과정에 400쪽이 넘는 영어 교재를 스캔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는 등 영어 교육을 위한 준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음

【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무역회사의 거래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동으로 갑작스럽게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오늘까지 세부적인 계약 사항, 과업지시서 등을 급하게 작성해야 함. 계약 담당인 ㄱ 대리는 오늘 연차휴가 중으로 어쩔 수 없이 팀장은 과내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ㄴ 사원에게 계약 준비 서류 작성을 지시. 정시퇴근을 예상 하던 ㄴ 사원은 갑작스런 야근으로 인해 기분이 상함

④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음
-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임
-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음

【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 (그 반대도 가능)
- 특정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도 우위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음

⑤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

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순수히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 상사가 퇴근 후 주말 또는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 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서로가 동창임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게 된 ㄱ 대리와 ㄴ 대리는 모임 술자리에서 과거사를 이야기하다가 해묵은 원한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고통이 유발됨

⑥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는지?

- ☐ 「파견법」 및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음
- ☐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⑦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 고객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 다만 2018.10.18.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

*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내문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함

취업규칙 개정

① 취업규칙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 취업규칙에 규정할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음
- ☐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 ①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

②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

- ☐ 취업규칙 미신고가 확인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25일 이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필요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③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가?

- ☐ 개정법에 징계가 유일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 및 사내해결절차를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한 경우라면 법률 위반은 아님
- ☐ 만일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두고 있는 이른바 ‘개방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음
 -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취업규칙 개정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가?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해결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 가능

제도의 실효성 관련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노동존중 문화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지방고용관서에서는

- ① 취업규칙 심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에 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사내 예방·대응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으며,
- ③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한 경우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 ④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② 기존 형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서도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데 중복 규제 아닌가?

-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 않고,
 - 다만 회사 내에 신고된 경우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며, 중복 규제가 아님
 - 특히, 성희롱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성 우려가 없음

③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내 해결절차가 잘 작동되지 않을 것 같은데?

-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되었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진정이 제기되면 지방관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치 사항에 법위반 사실은 없는지, 명백한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취업규칙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법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지도' 실시

* 법위반이 확인되어 개선지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위반 취약 사업장에 해당하여 차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④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

- 다만, 피해자는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가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 가능

* (예시) 피해자가해자 조사 누락, 목격자 등 중요 참고인 조사 미실시, 행위자를 피해근로자의 인근으로 재배치 등

- 행위자의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사내 재심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남성육아휴직자, 경험 청취 통해 가족친화문화 확산

-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 가족친화인증기업 관계자 및 육아휴직경험 아빠들과 간담회 -

-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은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관계자 및 육아휴직 경험 아빠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 가족친화인증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일·생활 양립제도 운영 현황과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을 듣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 현황>

- '18년 인증 1,201개사 : 신규인증 680, 유효기간 연장 312, 재인증 209개사
- 인증유효 현황('18.12월) : 대기업 364개, 중소기업 2,028개, 공공기관 936개
- 연도별 현황 : ('08년) 14개사 → ('16년) 1,828개사 → ('17년) 2,802개사 → ('18년) 3,328개사

- 간담회에 참석하는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로 인한 돌봄 공백,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배우자와 공동육아를 위해서 등을 꼽았다.

- 또한,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녀들과 친밀감이 높아지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된 것 같아 좋았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3개월을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밖에 지급받지 못한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현황은 '09년 502명에서 '17년 12,043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이용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크고 이를 낮설게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 간담회에서는 기업내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가 그 동안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제도를 실제 이용하고 운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며,
-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간담회 개요 >

- 일시/ 장소 : '19. 7. 12.(금) 12:00~13:30/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 참석자 : 여성가족부차관, '육아휴직 경험 아빠 및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관계자 등
- 내 용 : 남성육아휴직 사례 공유 및 일·가정양립 제도 운영 현황 청취를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방안 모색

□ 제도 개요

- (개요)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추진 경과) 가족친화법 제정('07) 및 인증제 시행('08. 6월), 가족친화 인증 공공기관 의무화('17. 3월)

※ 국정과제 「71-4.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및 내실화」 포함('17년 ~)
- (성과목표) 연 500개 확대('18년 3,300개, '22년까지 5,300개 목표)

○ (인증 체계)



- (인증 현황) '18년 인증 기업·기관은 3,328개사로 '17년(2,802개)에 비해 18% 증가
- 전체 인증 기업·기관(3,328개사) 중 중소기업이 2,028개사로 61% 차지

< 가족친화 인증 현황('08~'18) >

(단위 : 개사)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14	34	65	157	253	522	956	1,363	1,828	2,802	3,328*

* 대기업 364개사(11%), 중소기업 2,028개사(61%), 공공기관 등 936개사(28%)

□ 인증기준 등

- (인증기간)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2년) → 재인증(매 3년)
- (신규인증)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대기업·공공기관 10점, 중소기업 15점) 평가
-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유효기간 연장 40점, 재인증 45점 이상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5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5점) 평가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 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

- ☐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 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 승차거부 없고, 친절할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양어업 예비 선원들 준법조업 배운다

- 조업감시센터 오션폴리텍 어선 승선 교육생 대상 불법어업 예방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 조업감시센터(FMC*)는 7월 17일(수) 부산시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미래 원양어업에 종사할 오션폴리텍** 교육생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FMC : Fisheries Monitoring Center

** 해기인력 단기양성과정 교육

이번 교육은 앞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될 오션폴리텍 교육생 29명을 대상으로 하며, 원양수역에서 조업하기 전 알아야 할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규제와 한국의 조업감시방법 등 기존 교과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준법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특히,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불법어업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시스템 및 전자조업보고 단말기 사용 시연 등을 통해 조업감시센터의 불법어업 관리·감독체계를 현장감 있게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들어 선사로부터 원양어선 선장 및 주요 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 3.) 이후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 (2014년) 85명, (2015년) 164명, (2016년) 162명, (2017년) 241명, (2018년) 191명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나라가 준법어업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 어업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원양어업 인재들과 현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그림 1. 2018년 4월 오션폴리텍 연수생 교육 사진



그림 2. 2017년 9월 오션폴리텍 연수생 지도선 견학 사진